2019년 증평읍 자체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기　　간 : 2019. 4. 8.(월) ~ 4. 12.(월)(5일)

○ 감사범위 : 2016. 7. ~ 2019. 2.까지 처리한 업무일체

○ 감사반 편성 : 기획감사관외 4명

○ 감사중점내용

- 증평읍 업무 전반 및 공직기강 확립
-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적정여부 및 각종 민원 처리실태
- 공가 등 복무관리 분야, 기록물 관리 적정여부
- 물품, 각종 공사 및 보조금 분야 추진 적정 여부
- 회계질서 문란 및 편법·변태 운영사례 집중감사 등

Ⅱ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 총 지적건수 : 10건

○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부 서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계	주의	시정	현지시정 등	건	금액(원)
증 평 읍	**10**	8	2	-	-	-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처분내용

연번	제 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10 건	주의(8) 시정(2)	-	-	
1	미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소홀	시정	-	-	
2	전자문서 고유식별정보 보안조치 소홀	시정	-	-	
3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급 소홀	주의	-	-	
4	특별휴가 처리 부적정	주의	-	-	
5	회계 및 계약서류 작성 부적정	주의	-	-	
6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절차 부적정	주의	-	-	
7	무인민원발급기 현금 수입금 세입처리 소홀	주의	-	-	
8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	-	
9	용역완료에 따른 검사업무 소홀	주의	-	-	
10	증평읍 사무실 증축 공사(건축) 감독업무 소홀	주의	-	-	

처분지시서(1)

【제　목】미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적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제84조(과태료)제3항18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서는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등)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서는 ①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증평읍에서는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등록 이륜자동차(◎◎◎, ■■■, 2015 최초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이륜자동차 신고지연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2018. 11. 19.)’를 한번, 시스템에서 가산금만 계속하여 징수결의를 진행, 그 동안에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미등록 이륜자동차(▦▦▦, 2018 최초부과)에 대하여는 최초부과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는 부여 하였으나, 그 후 징수를 위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

○ 위 3건의 미등록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수납이 되지 않았는데도 압류 등 체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시 정

- 기관·부서명 : 증평읍

- 내 용

증평읍에서는 담당자 업무연찬,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수납 절차를 추진하시고, 계획서 수립 등 추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 분 지 시 서 (2)

【제　목】 전자문서 상의 고유식별정보 보안조치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조치현황 : 증평읍-7109(2017.4.26.)호 외 54건(출력물 참조)

【위법부당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정보가 포함된 공문서(첨부문서 포함)는 반드시 보안설정을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증평읍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증평읍-7109(2017.4.26.)호로 시행한 "체납과태료 조회요청 "외 54건의 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보안조치 없이 시행하였으며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나 그 밖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시 정

- 기관·부서명 : 증평읍

- 내 용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업무연찬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즉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 분 지 시 서 (3)

【제　목】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급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현　　황 :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 급식 품의기간 1개월 이상 초과　　:　4건(1,912,500원)
- 급식비 지급기한 지연　　: 16건(12,110,100원) / 91일

□ 시간외급식비 부적정 지급내역

지급일	지급명령번호	품의액(원)	품의기간		1)지연일수
계		12,110,100			91일
2016.7.29	299	659,400	2016.6.18.~7.18		4일
2016.11.30	469	757,000	2016.10.17.~11.27	(1개월이상)	
2017.3.14	105	205,500	2017.2.1.~3.9	(1개월이상)	-
2017.5.10	197	661,000	2017.4.5.~5.7	(1개월이상)	-
2017.5.10	198	289,000	2017.4.5.~5.7	(1개월이상)	-
2017.7.20	311	878,500	2017.5.30.~6.30		9일
2017.7.28	326	314,700	2017.5.30.~6.30		15일
2017.9.20	393	626,500	2017.8.1.~8.31		9일
2017.10.26	448	815,400	2017.9.1.~9.30		8일
2017.11.30	493	727,800	2017.10.1.~10.31		17일
2018.2.9	70	54,000	2018.1.25.~1.31		2일
2018.2.9	72	1,464,800	2018.1.1.~1.31		2일
2018.3.12	135	1,241,900	2018.2.1.~2.28		2일
2018.3.12	136	147,000	2018.2.1.~2.28		2일
2018.4.11	204	144,000	2018.3.1.~3.31		3일
2018.4.11	205	704,800	2018.3.1.~3.31		3일
2018.5.10	266	127,000	2018.4.1.~4.30		2일
2018.8.10	423	773,000	2018.7.1.~7.31		3일
2018.11.16	582	812,200	2018.10.1~10.31		7일
2019.2.15	51	706,600	2019.1.1.~1.31		3일

1) 지연일수(급식비)
- 2016~17년도: 결재일 - (마지막 급식일 + 5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16.2.20.시행)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 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토록 정하고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지출일을 포함하여 5일(2016.2.20.개정 후) 이내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증평읍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제공한 급식비 지급 4건(1,912,500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품의 하였고, 제공한 급식비 지급 16건(12,110,100원)에 대하여 최소 2일 ~ 17일(총 91일)을 지연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증평읍
- 내 용

급식비 지급 시 단가 기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비는 결제시기를 단축·집행하여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 분 지 시 서 (4)

【제　목】 특별휴가 처리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 행정과-10450(2017.5.8)호, 선거사무 종사공무원 특별휴가 실시계획 알림
- 행정과-19273(2017.8.29.)호, 증평군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계획 알림(재해·재난 대응 업무수행(협조) 부서 및 시군종합평가 결과 성적우수)

○ 특별휴가 처리 현황

신청인	사용기간	특가구분	특가사유	적정휴가
◎◎◎	2017.05.01.(1일)	기타	초등학생자녀 운동회	자녀돌봄휴가
▣▣▣	2017.05.10.(1일)	기타	선거사무 종사 특별휴가	포상휴가
▤▤▤	2017.05.30.(1일)	기타	투표사무 종사자(증평읍 간사)	포상휴가
▥▥▥	2017.06.02.(1일)	기타	선거업무 종사	포상휴가
▦▦▦	2017.06.02.(1일)	기타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관리관 근무	포상휴가
▧▧▧	2017.09.05.(1일)	재해구호휴가	행정과-19254(2017.08.28)에 따른 포상휴가	포상휴가
▨▨▨	2017.09.08.(1일)	재해구호휴가	행정과-19254(2017.08.28)에 따른 포상휴가	포상휴가
◆◆◆	2017.09.11.(1일)	재해구호휴가	행정과-19254(2017.08.28)에 따른 포상휴가	포상휴가
◇◇◇	2017.09.22.(1일)	기타	초등학교자녀 공개수업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7.09.25.(1일)	재해구호휴가	재해업무 포상	포상휴가
◉◉◉	2017.09.26.(1일)	재해구호휴가	행정과-19254(2017.08.28)에 따른 포상휴가	포상휴가
○○○	2017.10.23.(1일)	재해구호휴가	재해업무 포상	포상휴가
◎◎◎	2017.10.27.(1일)	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업무 포상	포상휴가
▣▣▣	2017.11.08.(1일)	재해구호휴가	개인사정	포상휴가
▤▤▤	2017.11.10.(1일)	재해구호휴가	재해업무포상	포상휴가
▥▥▥	2017.12.08.(1일)	재해구호휴가	가사정리	포상휴가
▦▦▦	2018.02.13.(1일)	기타	자녀 초등학교 졸업식	자녀돌봄휴가
▧▧▧	2018.02.23.(4시간)	기타	어린이집 자녀 졸업식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8.03.02.(4시간)	육아시간	초등학교 자녀 입학식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8.05.03.(1일)	기타	자녀 운동회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8.06.05.(4시간)	육아시간	초등학교자녀 참관수업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8.10.23.(4시간)	육아시간	초등학교자녀 학년학습발표회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9.01.10.(1일)	기타	자녀졸업식 참석	자녀돌봄휴가

【지적내용】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특별휴가) 제4항에 따르면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제9항에서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2017.4.25.부터 개정·시행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특별휴가) 제7항[2]에 의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 제8항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증평읍에서는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자녀돌봄휴가”가 아닌 “육아시간”, “기타휴가”로 허가하고, 행정과-10450(2017.5.8.)호, 19273(2017.8.29.)호에 의거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및 재해·재난 대응 업무수행(협조) 부서, 시군종합평가 결과 성적 우수로 실시된 “포상휴가”를 “재해구호휴가”, “기타휴가“로 허가 하는 등 2017. 5월 이후 특별허가 신청한 23건에 대해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증평읍

- 내 용

휴가 신청 시 사유에 적합한 휴가의 종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5)

【제　　목】 회계 및 계약서류 작성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표 1】 부적정 집행현황

적　요 (지급명령번호)	발의일	청구일 (카드결재일)	지급일	비　고
◇◇◇◇◇ 구입 (579, 2018.11.9.)	2018.11.8.	2018.11.8.	2018.11.9.	- 계산서 미첨부
□□□□□ 구입 (644, 2018.12.7.)	2018.12.6.	2018.12.6.	2018.12.7.	- 계산서 미첨부
업무추진 격려 급식비 지급 (649, 2018.12.13.)	2018.12.12.	2018.12.11.	2018.12.13.	- 카드결재 후 품의
◎◎◎ 배수로 정비공사 (650, 2018.12.13.)	2018.11.28.	2018.12.11.	2018.12.13.	- 이면계약서 미기재
▣▣▣ 집수정 설치공사 (651, 2018.12.13.)	2018.11.21.	2018.12.11.	2018.12.13.	- 이면계약서 미기재
▥▥소류지외 4개소 제초작업 (652, 2018.12.13.)	2018.11.27.	2018.12.11.	20178.12.13.	- 이면계약서 미기재

【지적내용】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제2항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제123조(계약체결)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별지 제67호 서식 및 별지 제68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및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제141조(계산서 등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제1항에 따라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군과 공사, 물품 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소득세법」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신용카드사용 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 후 지출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증평읍에서는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작성 시 이면계약서에 지체 상금율, 담보기간 작성 등을 필수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여 계약서류를 작성하였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출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서류 구비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음. 또한, 물품구입 시 의사결정(품의)을 사전에 하지 않고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 지급 후 그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를 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증평읍
- 내 용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계담당자 및 전 직원 관련지침 업무연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 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6)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절차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 부과현황 : 출력물 참조

【지적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1항에서 군수는 신고의무자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나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나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군수는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제1항에서 군수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제4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2항·제3항 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 제4항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증평읍에서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및 주민등록 신고지연과 관련하여 2016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15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증평읍

- 내 용

관련법령을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7)

【제　　목】무인민원발급기 현금 수입금 세입처리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지적내용】

○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제3조(적용범위)제1항에 의거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수입금의 정산)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증평읍에서는 2018.1.30.(1일 지연), 2018.2.1.(2일 지연), 2018.2.~4.(1일 지연), 2018.2.7.(1일 지연), 2018.2.21.(1일 지연), 2018.2.23.~25.(1일 지연), 2018.2.28.~3.1.(3일 지연), 2018.3.2.~4.(2일 지연), 2018.3.5.(1일 지연), 2018.3.7.(1일 지연), 2018.3.30.~4.1.(3일 지연), 2018.4.2.(2일 지연), 2018.4.3.(1일 지연), 2018.4.5.(1일 지연), 2018.4.10.(2일 지연), 2018.4.11.(1일 지연), 2018.4.13.~15.(1일 지연), 2018.4.19.(2일 지연), 2018.4.20.~22.(1일 지연), 2018.4.27.~29.(2일 지연), 2018.4.30.(1일 지연), 2018.9.6.(1일 지연), 2018.10.1.(1일 지연), 2018.10.8.(1일 지연), 2018.10.23.(1일 지연), 2018.11.21.(1일 지연), 2019.1.2.(1일 지연), 2019.1.4.(1일 지연), 2019.1.16.(1일 지연), 2019.1.29.(1일 지연) 등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간동안 무인민원발급기 현금 수입금을 30차례 지연하여 세입처리하는 등 수입금 납부 업무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증평읍

- 내 용

관련법령을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8)

【제　목】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부적정

【현　황】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보수공사

○ 사업기간 : 2017. 6. 22. ~ 6. 28.

○ 사업내용 : ▣▣▣ 보수공사 1식

○ 사 업 비 : 금19,500천원(도급액 19,500천원)

○ 도 급 사 : ◎◎산업 대표 ▦▦▦

○ 건설업 등록 여부 : 부

【지적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 인가 ·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3]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4]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증평읍에서 추진한 ▣▣▣ 보수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0천 원 이상 공사와 동시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1.실내건축공사업, 2.토공사업, 3.습식·방수공사업, 4.석공사업, 5.도장공사업, 6.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8.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기계설비공사업, 11.상·하수도공사업 등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실내건축공사업종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해당 전문 건설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도급사 ◎◎산업은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증평읍

- 내 용

증평읍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9)

【제　목】 용역완료에 따른 검사업무 소홀

【현　황】

○ 용 역 명 : ▣▣▣ 증축 실시설계 용역

○ 기　　간 : 2017. 1. 25. ~ 3. 24.

○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

○ 사 업 비 : 금6,508천원(도급액 6,508천원)

○ 도 급 사 : ◎◎건축사무소

○ 용역 완료서류 제출 : 2017. 3. 24.

○ 검사 여·부 : 부

【지적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증평읍에서 추진·완료한 ▣▣▣ 증축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위 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완료에 따른 준공신고서(용역완료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없을 경우 대가를 지급[5]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

5)『지방계약법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증평읍

- 내 용

증평읍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10)

【제　목】 ▣▣▣ 증축 공사(건축) 감독업무 소홀

【현　황】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증축 공사(건축)

○ 사업기간 : 2017. 4. 26. ~ 6. 23.

○ 사업내용 : 사무실 증축 A=59.4㎡(2층)

○ 사 업 비 : 금117,385천원(도급액 117,385천원)

○ 도 급 사 : ◎◎종합건설(주)

○ 공 정 율 : 100%

▢ 추진경위

○ 공사착공 : 2017. 4. 26.

○ 설계변경에 따른 실정보고(도급사) : 2017. 6. 19.

○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보고(증평읍) : 2017. 6. 19.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2017. 6. 20.

○ 공사준공 : 2017. 6. 23.

○ 준공검사 : 2017. 6. 26.

○ 대가지급 : 2017. 6. 30.

【지적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6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증평읍에서 추진한 사무실 증축 공사(건축)의 추진현황을 보면 도급사 조원종합건설(주)는 공사이행 중 2017. 6. 19일 설계변경 요인[6]이 발생하여 발주처인 증평읍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발주처인 증평읍에서는 2017. 6. 19일 검토보고를 통해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하였고 2017. 6. 20일 설계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여 2017. 6. 23일 도급사로부터 최종 준공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 받았다.

○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도급사인 ◎◎종합건설(주)에서 실정보고를 제출한 2017. 6. 19일은 준공 4일전으로 공사감독일지 및 작업일지를 통해 진행공정을 확인하여야 하나 준공서류 제출 시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으며, 예정공정표 일정 및 준공서류(준공서류 중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 확인서 사용내역 및 시공사진 등) 확인 결과 방수공정 완료 및 준공을 위한 현장정리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주요 설계변경 요인들은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라 볼수 없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로 위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실정보고 전 발주청의 승인없이 설계변경 요인을 선 시공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

6) 주기동 C1 철근의 설계 누락분 반영, 기존 구조체와 증축 구조체의 접합부 보강, 냉난방기 반영, 옥탑층 파라펫 콘크리트 타설 반영, 조경 식수 벌목

【처분요구】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기관·부서명 : 증 평 읍

- 내 용

증평읍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